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57건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등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어 주기적 검토가 필요 없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등 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절차’ 등 1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 5. 4. ~ 6. 13.)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조(「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7조(「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

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제7호를 삭제하고, 제29호 중 “운송가맹약관의 신고”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0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의2제1항 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8호 중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3 및 제49조에”를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로 한다.

제14조(「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